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17
----------	-------

발의연월일 : 2026. 7. 29.

발 의 자 : 윤준병 · 박희승 · 안태준
허종식 · 朴芝源 · 전종덕
이춘석 · 주철현 · 박 정
송옥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 및 수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른바 ‘응급실 뱅뱅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실제로, 현장 구급대원과 응급의료기관 간에 구급차의 실시간 위치, 이동 경로, 환자의 상태 및 응급실 병상·의료진 현황 등의 핵심 정보가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되지 못해 유기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이송자와 응급의료기관 간에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송 장치 및 통신체계 등을 구축·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 및 수용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4 신설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4(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와 응급의료기관 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구급차등의 실시간 위치 및 이동 경로에 관한 정보
 2.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상태 및 이송 중 실시한 응급처치의 내용에 관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3. 응급의료기관의 위치, 응급실 병상·의료진 현황 등 응급환자의 수용능력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②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

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및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③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송 장치 및 통신체계 등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전송 장치 및 통신체계 등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누출·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권한의 관리, 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그 밖에 정보보안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⑦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자, 구급차등의 운용자,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 및 응급의료기관의 종사자는 제6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전송의 범위·기준·방법과 그 밖에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62조제1항에 제4호의5 및 제4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5. 제4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에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전송한 자

4의6. 제48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송 장치 및 통신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8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 전송 장치 및 통신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①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구급차등의 운전자와 제48조에 따라 구급차등에 동승하는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를 말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① ----- ----- ----- ----- <u>말한다. 이하 같다</u> ----- ----- ----- ----- ----- ----- ----- -----.
② · ③ (생략) <u><신 설></u>	② · ③ (현행과 같음) <u>제48조의4(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u>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와 응급의료기관 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

여야 한다.

1. 구급차등의 실시간 위치 및 이동 경로에 관한 정보

2.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상태 및 이송 중 실시한 응급처치의 내용에 관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3. 응급의료기관의 위치, 응급실 병상·의료진 현황 등 응급환자의 수용능력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및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③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응급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송 장치 및 통신체계 등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전송 장치 및 통신체계 등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이송 통합관리시스템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이송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누출·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권한의 관리, 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그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의4. (생략)

<신설>

<신설>

밖에 정보보안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⑦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자, 구급차등의 운전자, 응급환자들을 이송하는 자 및 응급의료기관의 종사자는 제6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전송의 범위·기준·방법과 그 밖에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과태료) ① -----

-----.

1. ~ 4의4. (현행과 같음)

4의5. 제4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에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전송한 자

4의6. 제48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